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87호
2.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
3. 발의일자 : 2021. 5. 28.
4. 회부일자 : 2021. 6. 1.

II.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의식과 일상의 생태적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2.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 보장, 환경·생태 보존 등에 관한 가치관 함양 등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태전환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9조)
5.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와 용도, 기금의 존속기한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제18조)
7.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9조)
8.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9.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일정 시수 이상 생태전환교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21조)
10. 생태전환교육 관련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
11.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육에 관해 규정함(안 제23조)
12. 생태전환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큰 학교나 단체 등의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4조~제25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타: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487호로 발의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태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¹⁾’를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전 세계는 이를 계기로 지구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관련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20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바 있습니다.²⁾

1)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2) 환경부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국내 교육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과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접목,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시행, 탄소배출을 줄이는 학교 환경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1] 2021년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추진 계획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생태시민을 육성하는 네트워크 전환	생태행동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전환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교육계획 수립 ◦ 생태소양을 함양하는 생태전환교육 운영 ◦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및 교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세대를 지켜주는 ‘교사행동 365’ ◦ 미래 세대가 실천하는 ‘학생행동 365’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부모·시민행동 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을 줄이는 학교 문화 조성 ◦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화 ◦ 지속가능한 학교 생태환경 구축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에 관한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기존 환경보호 수준에 머물렀던 학교 환경 교육을 지구 생태보호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는바,

-
-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 2.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 3.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 4.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 5.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 유희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동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 ‘학교환경교육’의 용어를 ‘생태전환교육’으로 정비하고,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및 센터 설치,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및 위탁, 교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시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등(안 제6조~안 제9조),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등(안 제11조~안 제18조),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및 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안 제20조),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및 위탁(안 제21조, 안 제22조), 교원 연수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23조, 안 제24조), 포상(안 제25조) 등을 규정하여 총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 2)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 등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안제18조)
-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생태전환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 및 용도,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생태전환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해외 주요국 중 지구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 극복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환경교육법에 기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1990년에 국가환경교육법(NEEA)이 제정되어 환경보호청(EPA)내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환경교육국(OEE)이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보호청(EPA)이 환경교육에 대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환경보호기금의 5%, 환경위반 벌금의 5%, 폐기물 회수 소득 중 10% 등을 환경교육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³⁾.

-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 방향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과 관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생태전환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생태전환교육기금과 관련하여 아직 기금의 규모나 재원의 출처, 연도별 기금조성 목표액 및 집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 및 세계 기후변화 정책의 기초, 세계주요 국가 및 중앙정부의 사례 등을 폭 넓게 검토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환경부(2018). 주요 외국의 환경교육 비교 연구.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588, 2021.6.1.).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자료]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운영 체제



유·초·중등교육과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교육재정과	탄소배출제로,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
참여협력담당관	생태전환교육협력수업, 마을결합형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학부모리더연수
총무과	종이 없는 업무환경 구축
학교지원과	에코스쿨(생태전환교육파크) 구축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기후먹거리교육 관련 컨설팅
교육시설안전과	미래를 담는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과학전시관	(학생)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교원)생태전환교육 관련 직무연수
교육연수원	(일반)열린강좌,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원)생태전환교육 관련 직무연수
연구정보원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교육 관련 정책연구
학생교육원	(학생)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